

## 감리지적 사례 FSS/1912-28 :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

- 쟁점분야 : 영업활동현금흐름
- 관련기준 :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
- 결정일 : 2019년
- 회계결산일 : 2016.12.31.

### 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는 X1년 7월에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해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선금금 82억원 중 65억원을 X1년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대체 하였으며, 납품이 완료된 X2년 9월에는 선금금 및 건설중인자산을 모두 기계장치로 본 계정대체하였다. X1년 현금흐름표에서 B사에 지급한 선금금 82억원을 ‘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’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하였고, X1년말에 건설 중인자산으로 계정대체한 65억원은 ‘비현금거래’로 보아 주석에 기재하였으며, X2년에는 기계장치로 계정대체 된 선금금을 ‘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’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17억원 과대계상하였다.

### 2.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

A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선금금 등의 현금유출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감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X1년에 82억원 과소계상하고 X2년에는 17억원 과대계상하였음

### 3.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

-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(현금흐름표) 문단 16에 따르면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.
-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설비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.

### 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- ① 회계감사기준 500(감사증거)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,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평년보다 선금금 등의 증감이 매우 커음에도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감으로 보았으며 당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차이가 매우 큼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.

### 5. 시사점

선금금, 미지급금 등의 계정에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 성격의 자산 및 부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.